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279
----------	-----

2023. 10. 23.
자치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의 교육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기본 소양 교육에 대한 공백이 우려되므로, 신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주요골자

가. 안 제22조제7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일정 시간의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정한 부분 외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한다.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안 제22조제7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규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일정 시간의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생략></p> <p>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생략></p> <p>⑦ <신설></p> <p><생략></p>	<p><생략></p> <p>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생략></p> <p>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p> <p><생략></p>	<p><생략></p> <p>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생략></p> <p>⑦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민자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u>다만, 신규 주민자치회 위원의 경우 일정 시간의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생략></p>